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

-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안 제16조의5 신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다. 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4. ~ 4. 3.)

3) 행정규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명”을 “1,00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 ①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3항 중 “금고 수”를 “300명 이내에서 금고 수”로, “정하되, 300명 이상으로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제3항을”을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5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공단체”로”를 “공공단체”로, 제16조의5제1항 중 “대출계약”은 “대출계약 및 어음할인”으로”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금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회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 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u>100명</u>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 ----- ----- ----- <u>1,</u> <u>000명</u> ----- ----- ----- ----- -----.
1. 지역금고의 경우	1. -----
가.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u>5억원</u> 이상	가. ----- ----- - <u>50억원</u> ----
나.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u>3억원</u> 이상	나. ----- ----- ----- <u>30</u> <u>억원</u> ----
다. 주된 사무소가 읍·면(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u>1억원</u> 이상	다. ----- ----- ----- ----- <u>10억원</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 ① 금

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
췌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를 포함한다)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를 받은 금고는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
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
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

	<u>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4조(대의원회) ①・② (생략)	제24조(대의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300명 이상으로 한다.</u> ④ (생략)	③ ----- <u>300명</u> <u>이내에서 금고수-----</u> ----- <u>정</u> <u>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제31조(사업) ① ----- -- <u>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5</u> <u>를 -----.</u> --- ----- ----- -----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
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② (생략)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에는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단체”로, 제16조의5제1항 중 “대출계약”은 “대출계약 및 어음할인”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제3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

④ 제3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